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14
----------	-------

발의연월일 : 2026. 4. 14.

발 의 자 : 윤종오 · 전종덕 · 정혜경
손 솔 · 임미애 · 김종민
오세희 · 김재원 · 김태선
용혜인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5대 광역시 도심을 중심으로 산업·주거·문화·업무·연구가 융합된 복합 혁신공간을 조성·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초·중등교육 특례만 규정하고 고등교육(대학) 관련 조항은 부재하여, 혁신생태계 조성의 핵심인 인재양성·연구개발 기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현행법에는 대학·연구기관의 설립·입주 및 운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청년인재 유출 방지,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계, 글로벌 교육·연구 자원의 집적과 관련하여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국립대학 기반이 취약한 일부 광역시는 고등교육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 혁신 성장에 구조적 한계를 겪고 있음.

따라서 도심융합특구는 국내 대학과 외국교육기관·연구기관이 공

동 입주하는 융합형 모델을 통해 국제경쟁력과 지역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부 국정과제인 ‘5극3특’ 균형성장과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 집중투자, 지역혁신대학 연계(RISE), 초광역 교육·연구 허브 육성을 중점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도심융합특구 내에 공공캠퍼스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정부 국정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나아가 도심융합특구가 기업·정주 중심의 공간을 넘어 대학·연구기관이 앵커 역할을 수행하는 지식·인재 거점으로 고도화되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 산업 맞춤형 융합 연구·교육 강화 등 균형발전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특구개발사업구역 및 특구연계사업구역에 대학·외국교육기관·연구기관 등이 입주 가능한 공동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캠퍼스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주요내용

가. 국가·지자체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특구개발사업구역 및 특구연계사업구역에 대학·외국교육기관·연구기관 등이 입주 가능한 공동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지 매입·시설 건축 등 설립·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광역지자체장의 승인 절차, 공익법인 설립 및 재정지원, 국립학교
설치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특례(공동캠퍼스 소재지를 교지로
인정, 공동캠퍼스의 임차 가능) 등을 통해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자 함.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산업의 생태계 구축과 도심융합특구의 혁신공간 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구개발사업구역과 특구연계사업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주할 수 있는 교사(校舎), 연구시설 및 부지(이하 “공동캠퍼스”라 한다)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학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공동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 등 공동캠퍼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사업시행자는 그 일부를 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④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자는 교육부 심의를 거쳐 관할 광역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주 신청 절차, 제출 서류, 승인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대학의 설립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은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관할 시·도지사등은 공동캠퍼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학문·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을 공동캠퍼스에 둘 수 있으며,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 등기와 정관 및 사업의 내용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공익법인은 제6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관·단체·개인·법인 등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
3.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4. 공익법인의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⑨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는 국립학교의 경우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및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공동캠퍼스 소재지를 해당 국립학교의 교지(校地)로 본다.

⑩ 제4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은 대학(「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주된 위치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또는 연구조직의 일부를 공동캠퍼스에서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캠퍼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또는 연구조직의 범위, 수용하는 학생정원 및 운영기간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갖출 것
2. 공동캠퍼스에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이 가능한 임차권(사용대차를 포함한다) 등을 확보할 것
3.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갖출 것

⑪ 제4항에 따른 관할 시·도지사등은 제4항에 따라 입주한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 및 공익법인에 대하여 공동캠퍼스 입주승인기

준 이행 또는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캠퍼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⑫ 제4항에 따른 관할 시·도지사등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입주승인기준 또는 승인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제11항에 따른 명령이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⑬ 제4항에 따른 관할 시·도지사등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의3(청문) 관할 시·도지사등은 제32조의2제13항에 따른 입주승인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지원의 유효기간) 제32조의2제2항, 제7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에 한정한다)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3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32조의2(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산업의 생태계 구축과 도심융합특구의 혁신공간 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구 개발사업구역과 특구연계사업 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주할 수 있는 교사(校舍), 연구시설 및 부지(이하 “공동캠퍼스”라 한다)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u> <u>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u> <u>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u> <p><u>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공동캠퍼스를 조성</u></p>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 등 공동캠퍼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사업시행자는 그 일부를 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④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자는 교육부 심의를 거쳐 관할 광역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주 신청 절차, 제출 서류, 승인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대학의 설립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은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관할 시·도지사등은 공동캠퍼스의 효율적

인 운영·관리 및 학문·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을 공동캠퍼스에 둘 수 있으며,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 등기와 정관 및 사업의 내용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공익법인은 제6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관·단체·개인·법인 등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
3.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4. 공익법인의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⑨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는 국립학교의 경우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및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공동캠퍼스 소재지를 해당 국립학교의 교지(校地)로 본다.

⑩ 제4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은 대학(「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주된 위치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또는 연구조직의 일부를 공동캠퍼스에서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캠퍼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또는 연구조직의 범위, 수용하는 학생정원 및 운영기간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갖출 것
2. 공동캠퍼스에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이 가능한

입차권(사용대차를 포함한다)
등을 확보할 것

3.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관리계획
을 갖출 것

⑪ 제4항에 따른 관할 시·도
지사등은 제4항에 따라 입주한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
및 공익법인에 대하여 공동캠
퍼스 입주승인기준 이행 또는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
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공동캠퍼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⑫ 제4항에 따른 관할 시·도
지사등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
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
다.

1. 입주승인기준 또는 승인내용
을 위반한 경우

2. 제11항에 따른 명령이나 검
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⑬ 제4항에 따른 관할 시·도지사등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의3(청문) 관할 시·도지사등은 제32조의2제13항에 따른 입주승인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